

동물임상시험용·제조시험용·연구시험용 및 견본용등의 범위(제17조제2항 관련)

1.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

- 가. 동물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동물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
- 나. 제조업자가 시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조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
- 다.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(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)
- 라. 견본용(포장단위 기준으로 5개에 한정한다)
- 마.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희귀동물용 의약품

2.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

- 가. 동물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동물임상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
- 나. 제품 개발 등 연구목적의 연구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
- 다. 제품의 실물 확인 등을 위한 견본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
- 라. 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
- 마.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지정, 등급심사, 품질관리 기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등 심사용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
- 바. 국내에 신고·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